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387
----------	------

2018년 3월 6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.2.14. 양준욱 의원(찬성자 조규영 의원 외 13명)

나. 회부일자 : 2018.2.19.

다. 상정 일자 :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18년 3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호 단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탄력적인 의회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'총선거'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임.

2 안 제8조제1호 단서 관련

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'법') 제44조¹⁾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, 정례회의 집회일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법 시행령 제54조²⁾는 제1차 정례회를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원칙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, 다만 지방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종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제1차 정례회를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.
- 이러한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사황에 맞춰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(이하 '조례') 제8조는 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고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.

1) 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그러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됨에 따라, 현행 조례대로 6월 10일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될 경우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움.
- 또한 의회 의결로 9월·10월에 열릴 경우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³⁾에 따른 결산서 제출과 결산승인 사이 최소 3개월 이상의 결산승인 지연이 발생하고, 예산편성안을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⁴⁾(조례 제55조의2)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제기능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례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.

<표-1> 정례회 집회일 개정에 관한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"총선거"라 한다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<u>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1.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 <u>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- 이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회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3) 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4) 제55조의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이상을 종합하면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또한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상을 구현하는 측면에서도,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고유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의결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 론 요 지 : 생략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준욱 의원 (대표)발의

의안 번호	238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2월 14일

발 의 자 : 양준욱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조규영, 김진수, 이숙자,
이혜경, 신건택, 김동윤,
김제리, 유찬중, 김경자(강서),
박중화, 이병해, 장인홍,
우창윤, 맹진영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호 단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”를 “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"총선거"라 한다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<u>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